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7월 2일
- 회부일자 : 2009년 7월 8일

3. 제안이유

-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고,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“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” 로함(안 제2조제5호)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조례 제명 변경과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○ 안 제2조제5호의 특별장학생 승계자 요건을 “**우수하고 품행이 타의모범이 되는 자**”로 개정하는 바,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」의 “**교과학습발달사항**” 표기 방법이 교과별·과목별 석차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
○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**붙임** :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1부.